

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

년 제 기 (월 일 ~ 월 일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제출자 인적사항

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2.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

매입세액 불공제 사유	세금계산서			비고
	매수	공급가액	매입세액	
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				
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				
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·유지 및 임차				
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				
⑤ 면세사업등 관련				
⑥ 토지의 기본적 지출 관련				
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				
⑧ 금·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				
⑨ 합계				

3.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

일련 번호	과세·면세사업등 공통매입		⑫ 총공급가액 등	⑬ 면세공급가액 등	⑭ 불공제 매입세액 [⑪×(⑬÷⑫)]
	⑩ 공급가액	⑪ 세액		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합계					

4.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

일련 번호	⑯ 총공통매입 세액	⑯ 면세사업 등 확정비율	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(⑯×⑯)	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	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(⑰-⑱)
1					
2					
합계					

5.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

일련 번호	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	㉑ 경감률[1-(5/100 또는 25/100×경과된 과세기간의 수)]	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(사용 면적) 비율	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(㉐×㉑×㉒)
1				
2				
합계				

작성방법

1.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(①~⑨)

- 가.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(①~⑦)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 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수·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나. ⑧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4제6항 및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매수·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다. ⑨ 합계란은 ①란 ~ ⑧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(별지 제21호서식) 제2장 앞쪽 (16)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의 (48)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
2.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(⑩~⑭)

- 가. ⑩ · ⑪ 과세·면세사업 등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나. ⑫ 총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·총매입가액·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 사용면적을 적습니다.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·제4항)
- 다. ⑬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·매입가액·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.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·제4항)
- 라. ⑭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⑬ 면세공급가액 등을 ⑫ 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
3.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(⑯~⑰) :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적습니다.

- 가. ⑯ 총공통매입세액란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란은 과세·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적습니다.
- 다.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⑯ 총공통매입세액에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- 라. ⑰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마. ⑰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⑰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적으며,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(-)로 적습니다.

4.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(⑲~⑳)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·제85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.

- 가. ⑲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⑲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(2001. 12. 31.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)를 적용하고,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.
- 다. ⑲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(사용면적)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(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)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- 라.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⑲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⑲ 경감률 및 ⑲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(사용면적)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